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7일,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①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하고, ②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 전문병원은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김태선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태선의원안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병원의 경영 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